

■ CJ 온스타일 직매입 기본계약서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_20260414

현행	개정안
제8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 ③ ④ "CJ"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CJ"가 "협력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협력사"가 "CJ"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CJ"는 공제 내역을 "협력사"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 ⑥ (생략) 제16조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CJ"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1. ~ 5. (생략)	제8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 ③ (생략) ④ "CJ"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CJ"가 "협력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협력사"가 "CJ"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CJ"는 공제 내역이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상품대금에서 공제된 항목별 금액을 아래 양식에 따라 "협력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제항목 양식 : 명칭, 종류, 통지시기, 통지내용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에서 "협력사"가 요청하는 경우 "CJ"는 지체 없이 "협력사"에게 공제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공제 항목별 계산 방법, 적용 기준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제5항에 따른 증빙서류 및 추가자료 제공은 "CJ"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협력사"에게 통지할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협력사"가 통지 내용 열람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 ⑧ (생략) 제16조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CJ"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CJ"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협력사"를 공개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협력사"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행사의 자발성·차별성을 인정하여 제5항과 마찬가지로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부담비율 조정 가능 제17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1. ~ 5. (생략) 6. "CJ"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협력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